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2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1누54301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7. 선고 2020구단80274 판결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9.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6,170,68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03-22

19,683,5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